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24년 6월 26일(수) 10:00

전주시청 앞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교육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특별자치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 김정훈, 서유석, 이민경, 이정현)

1만 인 서명으로 우범기 시장, 태영건설 회장 국감 세울 것

전주시는 리사이클링타운 실시협약 해지하고,

해고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전주시에서 발생한 음식물 및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운영 파행이 반 년을 지나고 있다. 전주시민의 재산이지만 그 운영은 민간기업에게 맡겨져 있는 전주리사이클링타운은 민간투자사업이 갖는 문제들의 백과사전 격이다. 민간기업은 시민의 재산으로 음폐수를 무단 반입하여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바빴고, 이를 문제 삼고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한 조합원들은 해고하고 나섰다. 경험 없는 운영사가 운영을 맡으며 사고는 빈번했으며 결국 폭발 재해로 노동자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으며 그 중 1명은 목숨을 잃었다.

5월 2일에 발생한 리사이클링타운 폭발 재해는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시킨 전형적인 사례다. 리사이클링타운 시설은 수년 전부터 스테인레스 배관이 있던 자리를 청호스로 대체한 상태로 운영 중이었다. 비용 절감 때문이다. 스테인레스 배관으로의 교체였다면 화기를 사용할 일이 없었지만, 청호스 교체에는 화기 사용이 필요하다. 또한 밸브와 유량계가 있는 스테인레스 배관과 달리 청호스는 배관 내부 상태를 알 수 없다. 청호스 사용 자체가 누출 및 폭발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또한 여기에 기존의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해고와 시설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성우건설의 운영이 겹치면서 폭발재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전주시에 있다. 전주시는 시민의 재산인 리사이클링타운이 환경공단의 승인을 거친 설계규격에 따라 건설, 유지되도록 관리할 책무가 있다. 스테인레스 배관을 청호스로 교체하는 것은 설비의 중대한 변경이자 보증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전주시의 승인이 필요하다. 화관법, 산안법이 정한 배관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업체의 무단 시설변경이 중대재해로 이어졌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지금도 원래 스테인레스 배관이 있던 자리는 청호스로 대체된 채 시설이 가동 중이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시설이 안전해 졌으니 재가동해도 된다는 태영건설의 주장을 거들 뿐이다. 게다가 태영건설 컨소시엄 측이 사고의 원인이 노동자에게 있다는 식의 왜곡 인터뷰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이를 정정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

전주시의 봐주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관리운영계약서에 따르면 전주리사이클링타운 시설은 태영건설의 명의로 제반 책임과 의무가 이행되어야 한다. 태영이 성우건설을 앞세워 계약을 명백히 부정하고 있음에도 전주시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운영사 변경 역시 그 절차의 모든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됐다. 시설기본계획과 실시협약(제42조)에 따르면 운영사는 소각시설 50톤/일 또는 음식물처리시설 100톤/일의 운영실적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성우건설은 리사이클링타운 운영 전에 환경시설 운영실적이 전무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성우건설로의 운영사 변경을 승인했다.

또한 실시협약(제44조)에는 시설이 보증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도록 정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에서 복합악취가 설비 보증기준을 수 백 배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도 전주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 오히려 전주시는 태영건설 대신 시민의 세금을 20여 억 들여 악취저감시설 공사를 해주겠다고 나서는 실정이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우리는 태영건설 하수인을 자처하는 전주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한 뜻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우리의 첫번째 과제는 전주시가 이미 휴지 조각으로 만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리사이클링타운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또한 공대위는 1만인 서명을 통해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반드시 우범기 전주시장과 태영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리사이클링타운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활동은 기후 위기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는 폐기물 순환의 공공성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주시는 리사이클링타운 실시협약을 해지하라!

전주시는 리사이클링타운 사용료 지급을 중단하라!

전주시는 해고노동자를 즉시 복직시켜라!

전주시는 태영건설 컨소시엄 불법 행위 즉시 처분하라!

국회는 우범기 시장과 태영회장을 증인 채택하라!

2024년 6월 26일

전주종합리사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계획>>

1) 우범기 시장 및 태영건설 대표 국감 증인 채택 1만인 서명운동

(1) 방향

- 본 서명운동으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직
- 지역 및 전국 차원에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해고 사태, 중대재해 발생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선전
- 서명운동은 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최종 국감 증인채택까지 최대한 많은 언론 대응 사업을 진행하도록 조직

(2) 서명운동 일정

- 2024년 6월 26일 (수) ~ 국감 증인채택 시기까지
- 서명 완료 후 국회 기자회견 추진

2) <<우범기 시장 들어라! 이어말하기>>

- 취지 : 매주 수요일을 점심가경 불통행정 우범기 시장 귀 파는 날로 정해 시민발언대를 운영
- 일시 : 매주 수요일 17:00, 전주시청 앞
- 주제 및 진행 : 연사가 60분 내외로 전주시정을 주제로 강연. 이를 유튜브 중계 및 게시.
- 연사 :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전문가, 시민 등

[자료 1] 대표수탁자 명의로 이행되지 않는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제 1 조 정 의

제 1 항 정 의

“대표수탁자”는 주식회사 태영건설을 말한다.

제 3 조 위탁자, 수탁자 및 하수급인의 관계

제 2 항 수탁자들과 위탁자 간의 관계 및 수탁자들 간의 관계

이행한다. 단, 위탁자가 달리 승인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계약에 따른 수탁자들의 제반 책임과 의무(이 계약에 따른 보고의무 포함)는 대표수탁자의 명의로 이행되어야 한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BTO) 관리운영계약서

[자료 2] 부적격 운영업체로의 운영사 변경

라. 운영능력(O)

- 폐기물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에 한함)의 국내 운영실적(소각시설 50톤/일 또는 음식물처리시설 100톤/일 이상의 실적에 한함)이 있는 업체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中

• 변경 운영사 실적

구 분	운 영 실 적			지 분	본사업 환산 운영실적
	사업내용	해당지분	환산실적		
합 계				100%	218.7톤/일
성우건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2016.11.8-2023.12.28) - 음식물 300톤/일	12.5%	37.5톤/일	12.5%	4.6톤/일

성우건설이 전주시에 제출한 운영실적(문서번호 리싸이클링 제2024-04호/2024.1.5)

[자료 3] 태영건설의 환경기준 위반에 대한 전주시의 직무유기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⑦ 본 사업의 대기질 및 수질 등에 관한 법정배출부과금 및 행정처분은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협약상 <별첨10>(성능보증 및 규제조치)의 성능보증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7항에 따른 법정배출부과금과는 별도로 본 협약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때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제7항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단, 손해배상액 산정시 제7항에 따른 법정배출부과금은 제외하도록 한다.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조성사업(BTO) 실시협약 제44조

<표 7-2>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악취배출구 복합악취 측정결과

측정일자 (2022년 기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배출허용기준 (공기회석배수)
	배출구(A)	배출구(B)		
7월 13일	1,000	6,694	208	- 일반기준 · 기타지역 500 이하 · 공업지역 1000 이하 - 엄격한 기준 · 기타지역 300 이하 · 공업지역 500 이하
7월 25일	1,000	20,800	1,000	
8월 16일	1,000	3,000	1,000	
8월 17일	1,000	14,422	300	
8월 25일	3,000	10,000		

전주시 종합리사이클링타운 환경상영향조사 결과(2023)

양경규 국회의원 요구자료

12, 13, 14. 성능보증기준 관련

- 해당없음

환경기준 위반 관련 조치사항 질의에 대한 전주시의 답변(자료 : 양경규 전 의원실)

질의 내용 : 12.전주시가 전주시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성능보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방법, 횟수, 13.전주시가 전주시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성능보증기준초과 시 취한 조치, 14.환경상영향조사 등에서 전주시종합리사이클링타운의 성능보증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된 것에 대해 전주시가 실시협약 제44조8항에 따라 취한 조치

전주리싸이클링 집단해고 /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전주시장 우범기 / 태영건설 대표이사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

1만인 서명운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2024년 국정감사때 전주리싸이클링 노동자 11명을 집

단해고하고,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재해 책임자 전주시장 우범기와 태영건설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노동자 11명이 새해 첫날, 일터에서 쫓겨나 6개월 동안 전주시청에서 매일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주관운영사 변경 과정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조합원 11명만 고용승계 하지 않고 집단해고 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만 집단해고 한 것은 노조파괴 공작입니다. 공공시설인 전주시음식물처리장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전주시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었음에도 해결하지 않고, 민간투자자인 회사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 묵인하에 타지역 음폐수 처리를 통한 수익 창출,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 불투명한 회계 등 온갖 불법 편법을 자행해 왔습니다. 대주주인 태영건설은 공공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혈세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시켰습니다. 태영건설은 컨소시엄 회사 중 운영 능력이 전혀 없는 성우건설을 내세워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대주주인 태영건설이 져야 마땅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시설의 안전 문제에 대해 전주시와 민간운영사에게 수년째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와 민간운영사는 노동자 요구를 무시했고, 결국 우리 조합원 집단 해고 이후 가스폭발 발생하여 5명의 노동자가 크게 다치고, 그 중 한 명은 치료 중 숨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는 당연히 전주시와 민간운영사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노동자 탓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시는 문제 해결보다 시설 재가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국정감사에서 노동자 생존권과 목숨을 앗아간 책임자 전주시장 우범기와 태영건설 최진국-윤석민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중대재해 및 집단해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서명인	(서명)
주 소	
전화번호	

